#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783

발의연월일: 2024. 10. 18.

발 의 자:민형배・이개호・김문수

안도걸 · 소병훈 · 주철현

박홍배 • 정동영 • 김용민

박균택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박물관 및 미술관의 균형있는 지역 설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. 모든 시민들이 고르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.

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곳에 국립중앙박물관, 국립민속박물관 또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둘 수 있습니다. 문화유산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수집·보존·조사·연구·전시 및 문화향유의 균형적인 증진이 목적입니다.

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은 서울·과천·청주에, 국립민속박물관은 서울 ·파주에만 설립되어 있습니다. 수도권 등 특정지역에만 편중돼 문제 입니다.

이에,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균형있게 권역별로 설립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. 모든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문화와 예술을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(안 제10조제4항 후단 신 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이 권역 별로 균형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0조(설립과 운영) ① ~ ③	제10조(설립과 운영) ① ~ ③		
(생 략)	(현행과 같음)		
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	4		
유산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수			
집・보존・조사・연구・전시			
및 문화향유의 균형적인 증진			
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			
국립중앙박물관, 국립민속박물			
관 또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지			
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			
둘 수 있다. <u>&lt;후단 신설&gt;</u>	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		
	관은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		
	술관이 권역별로 균형있게 설		
	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		
⑤ ~ ⑧ (생 략)	⑤ ~ ⑧ (현행과 같음)		